

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용품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추가함(안 제16조 및 제27조제1항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